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박춘선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32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민간에서 전광판, 조명 등의 대중 표출시설을 이용한 대시민 홍보 활동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이는 민간 대중 표출시설에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고농도 발생 시 상황 전파와 시민행동 요령 안내, 미세먼지 저감 홍보 등 시민들에게 서울시 대기질 개선과 피해저감에 대한 안내를 더 폭 넓게 하기 위함입니다.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
안 제14조를 신설하여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민간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